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1076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4도1076 가. 업무상횡령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Q(담당변호사 U, R, V)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2300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

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기택(주심) 이인복 김소영